

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23. 10. .
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김포시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2조)
나.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다.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라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(안 제5조, 제6조)
마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고
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다. 그 밖의 사항
- 1) 입법예고
가) 예고기간 : 2023. 10. . ~ 2023. 10. .
나) 예고결과 :
- 2) 부서협의
가) 협의기간 : 2023. 9. . ~ 2023. 10. .
나) 협의결과 :
- 3) 관련부서 : 농정과

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이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, 농약,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.
2. “학교급식시설”이란 김포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 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정책수립) 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「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)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, 연 1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,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학교급식관계자,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(약칭: 농수산물품질법)

[시행 2023. 8. 16.] [법률 제19637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“유해물질”이란 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, 잔류성 유기오염물질, 병원성 미생물, 곰팡이 독소, 방사성물질,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학교급식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39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<개정 2012. 3. 21., 2019. 12. 10., 2020. 1. 29., 2021. 3. 23.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.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유아교육법

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0. 3. 24.>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606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6. 2. 3., 2017. 3. 14.>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 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 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- [전문개정 2007. 10. 17.][제목개정 2011. 6. 7.]

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09.29]

(일부개정) 2020.09.29 조례 제1735호 (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)

- 제7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, 지원규모,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,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1. 시의 교육 및 농정업무 실무과장
 2. 김포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과장
 3. 학부모 단체 추천인
 4. 농민(생산자)단체 추천인
 5. 교원단체 추천인
 6.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
 7. 시민단체 추천인
 8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.
-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시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.
1.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2.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상정한 학교급식 시책에 대한 심의
 3. 급식 지원대상 선정,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
 4.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

5.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